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2168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6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2168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 고 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춘, 김용빈, 송경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상아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1. 11. 17.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15 지분, 피고 D, E, F, G, H, I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5. 7. 25. 접수 제262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1995. 7. 24.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1/2)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원고는 위 3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J에게 합계 3억 5천만 원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3) 원고는 위 수표금 3억 5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로 1999. 7. 13. J에게 500,252,770원을 지급하였다.

4) J은 2005. 3.경 사망하였고, 피고 C가 3/15 지분, 피고 D, E, F, G, H, I가 각 2/15 지분 비율로 J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J에게 교부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999. 7. 13. J에게 500,252,77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7,338,59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피고 C, D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F, H, 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

피고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13. J에게 이 사건 근저당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500,252,77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 7. 14.경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G은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5. 1. 12.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1995. 2. 1. K의 매제인 L과 각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창업하여 골재 제조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L은 1996. 1.경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L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 4. 7.부터 2000. 4. 17.까지 합계 287,500,000원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L과 위 동업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4) K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7.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와 K의 대리인 L은 1995. 2. 1. M을 창업하고 원고와 K가 각 5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995. 1. 12. K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K는 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1995. 10.경 석산현장 발파사고를 계기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K에게 투자금 4억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1997. 11. 14. K에게 이자를 합하여 17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K를 대리한 L에게 2000. 4. 7.부터 2000. 4. 17.까지 합계 287,500,000원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4억 1,000만 원 이상을

반환하고 L과 정산을 마쳤다. 그렇다면 투자금 담보 목적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K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K는 원고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K는 이 사건 지분을 자신의 대리인이자 매제인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피고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L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약정, 정산합의 및 투자금 반환은 원고와 L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와 K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K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L이 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 2. 1.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인이 원고와 L으로 기재되어 있고 K가 동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K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시점(1995. 1. 12.)은 원고와 L 사이의 동업계약서 작성일(1995. 2. 1.)보다 앞선 시점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담보로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L이 K를 대리하여 원고와 M을 창립하여 동업하는 것이라면 M의 이사로 K 또는 L 둘 중 한 사람만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K와 L은 모두 M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6. 1. 16. 동시에 해임 또는 사임하였다.

④ 원고는 K와 투자반환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1억 7,500만 원을 1997. 11. 14.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K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⑤ L이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8가단1704호로 제기한 수표금등(원고는 L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합계 235,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않아서 L이 소를 제기함) 사건에서 원고가 L에게 총 2억 3,500만 원을 1998. 8. 31.까지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L의 위 수표금 청구에 대하여 위 수표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K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도 K를 조정화해절차에 참가시켜 위 수표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K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화해조항에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87527.0㎡
2.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604㎡
3.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4712㎡

